

보도해명자료 (14.3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車연비 검증 더 엄격해진다.. 국토부式으로
통일, 제하 기사 관련 (14.3.4, 아시아경제)

1. 기사내용

- ☐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
최근 산업부와 합의했음
 -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
비공개 회담을 갖고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관련 기준을
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키로 가닥을 잡았음
- ☐ 산업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하는데, 자체
시험시설이 없어서 연비 측정을 사설기관에 맡김
 - 연비측정 전 길들이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
해서 넘겨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산업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
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연비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동차 연비제도의 중복해소를
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, 아직 구체
적인 조정 기준이 결정된 바 없음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- ☐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 기관은 사설기관이 아닌 KOLAS
(한국인정기구)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임
 -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라
KOLAS(한국인정기구)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인 자동
차부품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석유관리원, 한국
환경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함
 - 참고로, KOLAS 인정제도는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능력,
시험환경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을
인정하는 제도로,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는 국제적으로 상호
인정되는 공신력을 가짐
 - *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임
- ☐ 연비측정시 길들이기 기준은 양부처 모두 현재 3,000km
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
 - * (산업부)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, 별표 8
 - * (국토부)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, 별표 1
 - 연비측정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비측정시
실시하는 "길들이기"는 미국, EU 등도 최저·최고 기준을
3,000km ~ 16,000km 사이로 규정*하고 있으며 정부(시험
기관)가 아닌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
 - * 미국 기준 : 10,000mile 이하 / EU 기준 : 3,000~15,000km 이하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나성화 과장(044-203-5390)
오재철 사무관(044-203-5391)

□ 개 요



한국인정기구
KOLAS 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
▶ 기술표준정책부 시험성능기제도팀 (02) 509-7229~29
▶ 제품안전정책부 계량계측팀 (02) 509-7230~33

- (관련법규)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/IEC 17025
- (제도개요)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능력, 시험환경 등을 평가하여 공인 시험·검사기관(공인기관)으로 지정하는 제도
 -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
 - * 미국,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제조자에게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

<KOLAS를 통한 국제적 분쟁 해소사례>

- '06년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국과수가 현장에 있던 머리 카락, 치솔 등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, 프랑스인 양부모의 것으로 나타났으나, 프랑스인 양부모는 국내 기술을 무시
 - 국과수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한 후 프랑스인 검거
- '06년 국립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 다이옥신을 발견하였으나, 미국정부는 한국의 시험능력을 의심하고 Raw data 제출을 요구
 - 미국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립수산물검역검사본부 정문에 걸린 KOLAS 인정 현판만 확인 후 자진 철수

- 공인기관과 비공인기관의 차별성
 -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 보장
 - 시험·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대고객 이미지 제고
 -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분석능력 제고와 전문성·기술력 입증
 -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한 이중시험·검사의 해소로 수출비용 절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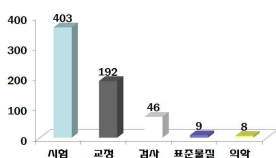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- 공인기관의 자격요건
 - 고객의 비밀정보 및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수립 필요
 - * 전자전송 시 보안 및 기밀유출방지절차, 법적인 소송문제와 관련되어 의뢰된 시험결과 보호,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을 위해서 의뢰된 시험결과 보호 등
 - 고객에게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보장
 - 직원 자격요건, 시험장소 및 환경조건, 장비, 검교정, 소급성 유지, 시험방법의 유효화
 - 측정 불확도 값을 명확하게 표기 및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시험 데이터의 해석
 - 시험소간 비교시험,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등

- KOLAS 인정분야
 - (시험) 역학, 화학, 전기 등 11개 대분류, 127개 중분류
 - * 자동차 연비, 배출가스 시험은 “화학” 분야에 속함
 - (검사) 산업용 설비 및 기계, 공산품 등 10개 대분류, 27개 중분류
 - (교정) 길이, 질량 등 9개 대분류, 41개 중분류
 - (표준물질) 화학조성, 물리적 특성 등 3개 대분류, 31개 중분류
 - (의학) '10년부터 시범인증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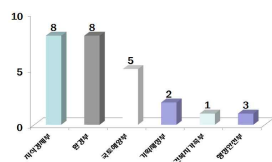
- KOLAS 현황('12.4월 기준)

<KOLAS 인정 현황>



총 658개 기관 인정

<KOLAS 활용 현황>



시험·검사 관련 10개 부처 37개 법령 중에서 7개 부처, 26개 법령에서 KOLAS 도입

□ 연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요건

- 자동차 연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OLAS 인정을 받아야 함

< 에너지이용합리화법 >

제15조 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

-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.

1. 국가가 설립한 시험·연구기관
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3.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< 국가표준기본법 >

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·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험·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,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·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.

-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'96.10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,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 '04.3월 지정 취소
- * '02.11월 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KOLAS 인정을 받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,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 않음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